



식사공급계약서



식사공급계약서

고양리집 (이하 '갑'이라 칭함)와(과) "(주)사랑과선행"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일반식사 운영을 위탁하고 '을'이 일반식사 운영을 수행하는 거래에 관련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상거래를 확립하고 상호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급품목 및 가격)

공급품목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물품정보에 의하며, '갑'에게 제공되는 가격은 본 계약기간 중 _____ (vat포함)으로 적용한다. 단, 제 2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입원가 및 제세공과금, 기타 관리비 등 운영경비가 급격한 물가상승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 반영) 등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상승한 경우, "갑"과 "을"은 최적급식을 위하여 '식단가'를 조정한다.

제 3 조 (발주)

1. '을'은 매월 식단표를 제공한다.
2. '갑'은 식수 인원 변경 시 D-2 일 오전11시까지 '을'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제공받은 식수인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량 지급하도록 한다. 추후 시설명세서의 식수에 의거하여 매월 식수를 산정한다.

제 4 조 (납기)

'을'은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갑'이 발주한 물품을 도착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승인하에 분할 납품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납기 지연 및 결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 5 조 (검수)

1.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을 인도받은 즉시 검수하고, 검수확인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2. 발주한 물품에 대한 수량, 품질 등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수는 '갑'과 '을'이 지정된 검수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검수가 종료된 이후의 물품의 관리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4. 검수 시 수량 부족이나 품질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정상품으로 보충 및 교체하여야 한다.

제 6 조 (물품의 인도 및 이의 제기)

1. '갑'이 발주한 물품의 인도장소는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 지정한 장소로 한다.
2. '을'이 납품한 물품은 '갑'과 '을'이 선정한 검수기준에 따라 '갑'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3.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에 합격한 물품은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검사 및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4. 인도된 물품의 수량 부족이나 품질의 하자에 대하여 '갑'은 물품의 인도 시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검수완료 및 인도 후에는 제5조 3항에 따라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5. 썩방의 과실 없이 인도 시 발견하지 못한 품질의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물품을 첨부하여 인수 후 7일 이내에 '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갑'은 물품 인도 받을 시 냉장냉동보관을 요구하는 품목은 검수 즉시 검수 후 즉시 냉장냉동보관을 한다.
7. '갑'은 당일 인도 받은 식사에 대해 수령 후 2시간 이내 섭취 및 폐기 한다. 단, 일부 간식 품목은 제외.

제 7 조 (대금결제)

1. '을'은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1개월(1일~말일) 단위로 결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제공하며, '갑'은 월 청구금액 (VAT 포함. 단,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은 예외)을 당월 말일 (지급일시)까지 계좌결제를 통해서 결제하기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토록 한다.

(입금은행: IBK기업은행 / 입금계좌번호: 313-084283-01-018 / 전용계좌부여 예금주: (주)사랑과선행)

2. 제 1항의 대금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때 '을'은 '갑'에게 통보함으로써 즉시 위탁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입금 지연에 따른 대금의 연체이자(연 20%) 및 대금회수에 따른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통지의무)

'갑' 또는 '을'은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등 제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 년 1 월 4 일 ~ 2025 년 12 월 31 일)으로 한다.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며, 식사 단가에 대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제 10 조 (비밀유지의무)

'갑'은 본 계약에 관련되어 '을'로부터 제공받는 가격해택(할인가) 및 특전의 내용을 제3자 또는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제 11 조 (계약해지)

1. '갑' 또는 '을'은 다음 1호 내지 3호 사유 발생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4호의 사유 발생 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갑' 또는 '을'에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이 있어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2) '갑' 또는 '을'에게 파산, 회생개시결정 또는 그 신청, 워크아웃의 신청 등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갑'이 '을'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품질에 하자가 생겨 반품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이행 하였을 경우
 -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을 경우
2.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는 "을"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을"이 감수한 초기 운영비 운영 간접비 등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갑'이 본 계약의 6 개월 의무사용 기간 중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거나 '갑'이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 일백만원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FS위탁급식을 위해 잠시 사용을 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없음)

제 12 조 (손해배상)

1. '갑' 또는 '을'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천재지변 및 사고로 인한 부득이한 배송사고 시 식사를 대체 할 수 있는 상품을 사전 제공 한다. (해당 시설 1일 식수 량)
3. '갑' 또는 '을'이 계약 성립 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또는'을'은 즉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4. 위 손해배상액은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연간 납품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갑'또는'을'의 사정에 의거하여 사양 변경 등으로 본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갑'과'을'이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15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관할은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불가항력)

전쟁, 폭동, 내란, 법령제정 개폐, 수송기관의 사고,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을'이 납품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본 계약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 17 조 (기타)

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 약 사 항 : 11조 3항은 삭제함, 11항은 11
받 제 9

2025년 1월 3일

주 소 : 경기도 석양주 고골길 264번길 3-13

(갑)

회사명 : 고양우리집
대표자 : 양순애

(인)
양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17, 포티스빌딩, 4층

(을)

회사명 : (주)사랑과선행
대표자 : 이강민



이동급식 계약안내 확인서

■ 먼저 (주)사랑과선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급식 계약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정확히 숙지하셨다면 본인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본인확인)

이동급식 계약 안내사항.

1. 식사정량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안내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요

※ 1회 제공 정량 : 밥 180g / 국 130g~200g / 주찬 80g / 부찬A 80g / 부찬B 40g / 부찬C 40g 김치 40g
(식재료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2. 식사 배송시간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요

(예) : 눈 / 비 또는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배송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 : 거리와 지형에 따라 지연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10분 ~ 50분] 지연 될 수 있음.

3. 식사단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안내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요

(물가 상승률과 운영비용 인상에 따른 단가가 인상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4. 컴플레인 발생 시 진행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요

(예) : ① 시설에서는 배송기사 또는 각 지점의 점장에게 컴플레인 요청

② 각 지점의 점장은 컴플레인 확인 및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설 담당자 또는 시설의 대표자에게 내용에 대하여 개선 및 답변을 한다.

5. 식단표 제공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 예 ☐ 아니요

(주)사랑과선행은 이메일로 주 단위 식단표를 제공하며 시설 요청 시 한 달 식단표를 제공한다.

단, 한 달 식단표는 재료 수급에 따라 실제 제공되는 식단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간혹 담당 직원이 한 달 식단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의 대표 또는 총괄관리자는 해당 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사전에 안내 바랍니다.]

6. 식사관련 및 운영적인 부분은 해당지점 점장에게 문의한다.

☒ 예 ☐ 아니요

(부재 시 요청내용을 문자로 발송한다.)

▶ 효도국(고양점) 조용우 점장 : 010-5580-1279

※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을 정확히 안내 받았습니다.

사업자명 : 고양우리집

성명 : 양순애

(인)